
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15.

발의자 : 김병기 · 이철희 · 김진표

김영진 · 최재성 · 박정

이상현 · 천정배 · 최운열

백혜련 · 임종성 · 송갑석

김성수 · 이춘석 · 김영호

신창현 · 안규백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5·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, 신청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현행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며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매우 한정적임.

이에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원활한

조사활동 및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이 법 시행일부터”를 “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진상규명 신청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<u>이 법</u> <u>시행일부터</u>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23조(진상규명 신청) ① (현 행 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위원</u> <u>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</u>--- -----.</p> <p>③ (현 행과 같음)</p>